

# 석유산업 대외개방 영향과 대응방안(하)

## - 산업자원부 -

이 자료는 산업자원부와 정유 5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등이 석유산업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연구자료 중 「정제업 및 주유소업 대외개방의 영향 및 대응방안」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 IV. 대외 개방의 국내 석유산업 영향

#### 1. 개방후 각국의 공통적 현상

- Restructuring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 低효율 주유소 퇴출로 인한 회사당 주유소수의 감소
- FRB(Forecourt Retail Business) 및 Self주유소 확대, 카드화산 등 주유소 경영의 질적 변화
- M&A 발생 및 동종업체/異업종과의 전략적 제휴 활발
- 유통업체 등 異업종과의 경쟁 발생

#### 2. 석유 산업구조에의 영향

##### 가. 대외 개방의 긍정적 효과

- 당분간 기존 정유 5사 체제 유지 전망
  - 국내 석유수급 여건상 기존 5개 정유사도 포화상태 일 뿐 아니라, 정유산업의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기업의 정제업 신규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더라

도 기존 국내정유사를 인수·합작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 5사 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국내 정유사간의 전략적 제휴 확대. 판매조직의 통합 및 슬립화
- 현재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로 이르는 3단계 유통구조 축소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시장관행 및 유통질서의 급속한 개편
- 외국자본의 유통부문 진출은 풍부한 자원과 선진 유통기법의 도입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하이퍼 마켓, 셀프 주유소 등 다양한 형태의 주유소업 확대를 촉진.
- 異업종의 유통시장 참여 및 제휴 확대
- 주유소 전문경영 용역사업 출현

##### ○ 경영기법의 선진화 및 재원조달 용이

- 경영심화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 특히 메이저 또는 산유국이 국내 정유사의 인수·합작을 통해 국내 석유산업 진출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등을 통해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국내 정유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높은 부채비율과 고금리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

내 정유산업은 외국기업의 진출로 낮은 비용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석유산업 비용구조를 낮출 것임.

○ 원유확보력 제고

-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상류부문을 갖고 있는 메이저나 중동 기업군으로 예상되는 바 비상시 보다 효율적으로 원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정유사의 경영전략 변화

- Refinery의 가동률 축소 및 탄력적 운영확산(시장 및 설비확장 전략에서 수익위주의 경영확산)
-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및 국제적 경영여건을 고려한 경영전략, 국내 정유산업의 국제화 촉진
- 정부의 시혜적 정책 및 규제정책에의 의존성 탈피
- 정유업 경쟁력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한 물류체계의 개선, 물류설비 이용 공동화, 물류시설 집약화, M&A 등 유통효율 및 산업효율 제고정책의 가속화

나. 대외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 가능성

○ 한계기업의 퇴출압력 및 국민경제에의 부담

- 경쟁 심화로 기존 정유사의 수익성 악화, 거래처 이탈 및 시장점유율 하락
- 한계 정유사의 퇴출압력 가속화. 지분매각, 또는 매각후 사업 철수
- 한계 주유소의 퇴출. 저효율 주유소의 휴폐업으로 회사당 주유소수 감소
- 이러한 한계기업의 퇴출은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효율화를 높일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높은 사회적 비용부담이 일어날 것임.

○ 축소지향적 경쟁지속

- 파괴적 가격경쟁으로 정유업 및 주유업의 마진이

축소되고 유리한 여건의 유통업체에 대한 선점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경쟁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쟁 심화에 의한 석유산업의 마진 축소로 투자재원 조달이 용이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인 석유공급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

○ 유통질서의 혼란

- 외국기업의 저가 경쟁 전략이 구사될 경우 부당 경쟁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경쟁심화로 부당 염매행위, 차별가격 행위 확산
- 주유소의 경품, 할인행위, 부당 고객유인행위등 공정거래의 위반행위 속출 우려

○ 정부의 정책집행력 약화

- 그동안 수급 및 가격관리 등에 관한 정부의 권고사항이나 지침 등의 정책 추진력 감소
- 기간산업이나 공공재로서의 석유산업에 대한 인식이 축소됨으로써 비상시 석유안보 및 가격, 수급관리가 정밀한 법과 제도의 수립에 의해서만 통제

○ 투자부진에 의한 설비부족

- 국내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과 함께 외국기업도 한 국시장에 대한 정제설비투자의 경제성이 중국 등 타 지역보다 낮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석유수요보다 국내 정제능력이 낮아질 수 있음.
- 예컨데 외국기업은 중국 등 타 지역에 정제설비를 신설, 기 확보된 국내 유통망을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

○ 외국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선점

- 국내 기업의 자금난과 경쟁심화에 의한 마진 저하로 고도화 설비투자가 늦어지는 동안 풍부한 자금을 가진 외국기업의 고도화 설비를 먼저 투자한다면 향후 내수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외국인

선점이 예상.

### 3. 산업부문별 영향

대외개방의 석유산업 부문별 영향

	예상변화
정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유사들의 구조조정 가속화</li> <li>○ 한계기업 퇴출 가속화 및 정유사간의 전략적 제휴 확대</li> <li>○ 경영기법의 국제화</li> <li>○ 홍보, 이미지 광고 확산, 油外사업 광고비 증가</li> </ul>
수출입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정유사의 점유율 하락</li> <li>○ 시장진입이 용이한 스파르마크리트이나 직매시장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진입으로 가격경쟁 격화</li> </ul>
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대리점 기능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영역 확대(정제업 및 수입업 진출, 외국사와의 활발한 제휴)</li> <li>- 대리점 기능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도매 기능 포기 및 Chain-dealer화</li> </ul> </li> <li>○ 한계 대리점의 부실화 및 퇴출</li> <li>○ 복수거래, 부판시장 확대에 따른 횡적거래 등 불법, 탈법거래 확산 가능성</li> </ul>
주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정유사 지원관행 및 유통질서의 개편</li> <li>○ 주유소의 공급계약 형태의 다양화</li> <li>○ 영업종의 유통시장 참여 및 제휴 확대</li> <li>○ 저효율 주유소의 휴폐업으로 주유소수 감소</li> <li>○ FRB, 셀프서비스 확대</li> <li>○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부당거래 행위 속출 및 거래 질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마찰 예상</li> </ul>
석유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formula가격체계에서 수입도착가 Base로 변화</li> <li>○ 제조창 반출 가격의 수입가 수준으로 지속적 하락</li> <li>○ 지역별, 판매사별 차등가격의 보편화</li> </ul>

## V. 대외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 1. 정제업 신규진입 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

- 정제업등록제 전환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정제업 등록 업무처리지침 제정 검토)
  -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기존 정제업 허가업체의 사후관리
  - 신규등록업체의 등록요건 구비여부 심사, 사후관리 등 등록관리방안

- 장기수요전망에 입각한 투자합리화(과잉·중복투자 방지) 여건 조성
  -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조정을 위한 석유협회의 기능 정립

### 2.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

#### 가. 대외개방에 따른 정유부문 과제

- 정유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한계기업의 퇴출, 산유국 및 메이저와의 M&A,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종 업종 및 이업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전력, 가스부문 등 연관산업으로의 경영 다각화와 국제시장의 상하류 부문 진출 확대
  - 정유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 국내 정유사의 외국사 합작, 해외자금 조달, 선물시장 활용, 선진유통기법의 도입 및 확대

#### ○ 기업효율성 제고

- 자체 유통망의 효율성 제고(통폐합 등), 구성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해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
- 경쟁사와의 과감한 물류통합, 시설 공동화 등을 통한 물류 코스트 저감
- 확대경영을 지양하고 수익이 낮은 부문은 정리하는

## 고수의 위주의 기업 경영 필요

- 정유사와 주유소와의 효율적인 계열화 강화방안
  - 정유사와 유통업체간의 적정 공급계약기간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 필요(현행 1년, 외국의 경우 3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
  - 일반판매소(부판점)에 대한 상표표시제 확대시행 방안 검토
- 정유사의 유통자금지원 축소 및 풀사인 변경에 따른 부작용 대책
  - 외국상표 도입에 따른 풀사인제도 운영 세칙 마련 (공정거래행위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신마케팅 전략 도입
  - *Buyer's market* 차원에서 소비자의 욕구파악 및 불만해소 전략을 도입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확대

## 나. 유통부문 과제

- 유통시장 다각화
  - 소규모 셀프 주유소 확대
  - 슈퍼나 백화점 등 소매그룹 및 유통산업과의 연합
- 주유업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
  - 상법, 소방법, 환경 및 안전관리법 등
- 경쟁력이 취약한 주유소의 원활한 사업퇴출 지원방안
  - 주유소 전업자금 지원 검토
  - 주유소를 전업하여 벤처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벤처창업자금을 준하여 자금 융자
  - 주유소협회에 주유소전업안내센터 설치, 주유소 사업성 분석, 경영다각화 등 경쟁력 제고 지원

- 정유사와 주유소와의 자금청산문제 해결, 새로운 사업안내, 전업자금 지원 등

## 3. 외국기업과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제도 정비

- 외국기업 유치 및 국내진출 동향 파악
  - 한국의 석유산업 홈페이지(*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개설(석유협회 주관), 한국 석유산업의 안내, 외국기업 진출현황 등 소개
  - 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의 정보망, 시·도의 석유판매업 등록접수현황을 연계하여 동향파악 기능 강화
- 국내시장에 국내외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여건의 조성
  - 정부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운용요강 제정(가격, 풀사인, 품질 등)
  - 원유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확대 : 현행 나프타 제조용 원유 → LPG 생산분까지 확대
- 국내외기업에게 저장시설, 석유비축등 석유수급안정의무의 동등한 부과(기존 석유사업법상의 의무 부과)
  - 신규진입자에게 석유사업법상의 각종 의무를 적극 고지

## 4. 석유 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도개선

가.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의 차등화

○ 석유산업의 자유화 시행 이후에도 석유산업은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국내석유산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수익성만을 추구하여 특정제품만을 수입하거나, 무모한 제품수입을 할 경우 국내 석유류 수급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특정 유종의 Hit&Run식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차등적 관세를 적용필요

- 대외개방 이후에는 적정 정제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신규 수입업자가 출몰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신규수입업자는 국내안정공급이라는 의무를 지지 않고, 계절적 요인, 국내수급상황을 교묘히 이용, 단기수익성을 노린 Hit&Run식 운용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큼.
- 이는 국내수급 안정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소비지정제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정제업자들이 가능한 한 원유를 도입·정제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국별 원유 및 제품 수입관세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비고
한 국	5%	5%	5%	5%	
일 본	215¥/kl	1,400¥/kl	580¥/kl	1,290¥/kl	원유의 기본세율은 무세
미 국	0.105\$/B	0.525\$/B		0.525\$/B	원유 API 25° 이상
영 국	2.3%	5.6%		3.5%	
프랑스	2.3%	5.6%		3.5%	
독 일	2.3%	5.6%		3.5%	
이태리	2.3%	5.6%		3.5%	
스페인	2.3%	5.6%		3.5%	
핀란드	2.3%	5.6%		3.5%	

○ 이러한 차등관세 적용은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원유관세는 제품관세에 비해 낮거나 무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석유류에 대한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기술개발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원유와 제품간의 차등관세는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안임.

### 나. 수입부과금 제도의 개선

○ 석유수입부과금 도입 취지는 석유제품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 달성여부는 석유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인도·사용시 영향을 미침. 현행 제도는 통관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정유사에게 자금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소요자금의 회수시점까지 일정기간 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함.

○ 부과금 유예시도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유와 제품간에 유예기간 차등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제업자의 경우 정제처리 및 Blending 기간 만큼 수입업자에 비해 부과금에 대한 추가 자금 부담이 발생함.

○ 또한 수입시 부과금 납부대상이 아닌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은 수입시 원유형태에서 부과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품(석유코크스, 유황 등)이 수출되었을 경우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국립기술품질원 및 관세청으로부터 기준소요량,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을 고시 받아 환급받고 있음.

## 5.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 상류부문을 가진 외국진입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해 상류부문의 이익을 포기한 저렴한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저가격에 공급하는 행위의 불공정 거래 여부
  - 동 기업 상류부문의 평균 원유공급가격이 국내 도입 원유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해외 사례를 통해 검토
- 대외개방에 따른 다양한 가격형성에 대비해 유가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
  - 유가모니터링 결과와 수익성과의 관계 분석 및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정조치 필요성 판단
  - 일반판매소(부판점)까지 유가모니터링 확대 검토
-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초기단계의 과열 가격경쟁에 대한 정부 차원 및 민간자율적인 대책
  -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정립(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
  - 구체적인 유통질서행위의 적법,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공시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사전방지(유형별 사례집 작성 배포)
  - 가격인하 판매(덤핑)가 비교적 용이한 부판시장 성장에 대비한 제도개선. 일반판매소(부판점)는 등유 및 신설되는 난방유만을 취급토록 하고 경유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검토(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은 휘발유, 경유 판매 허용)
  - 정유사(석유협회), 주유소(주유소협회), 대리점(석유유통협회)등의 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거래질서 확립 유도

- 정유사 및 주유소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건설화방안
  - 석유개발공사 등을 활용 표준 석유제품 가격 공시를 검토하여 정유사 및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출혈가격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유도
- 석유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제업, 유통업, 수입업체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가칭 “석유유통위원회”를 설치, 운영 검토
  -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이 함
    - 석유공정거래제도 연구, 조사
    -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제소
    - 석유 공정거래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 및 조정
    - 석유 공정거래에 대한 제도 개발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정(일본의 경우 석유업계의 부당염매 행위 제소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부당염매 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쟁제한적 행위로 규정)

## 6. 상표표시제의 보완

- 상표표시제의 도입 및 운영 취지는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 오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있음.
  - 따라서 본 상표표시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공급자 상표표시 부착을 반드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현재 국내 대부분 판매업자가 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국내 석유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정유사와의 전속거래를 통한 자금 지원 수혜 및 정유사의 인지도 활용 등을 향유하기 위한 자발적/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며, 상표표시제의 제도적 의무사항과는 별개임.

- 기본적으로 현행 상표표시제는 판매업체들이 국내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으로서, 제정 당시에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나, 대외개방 등 석유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업체의 진출 등 다양하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의 제약이 존재함.
- 주유소가 자체 상표를 상표표시제와 유사하게 표시하여도 현행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음. 그러나 동 상표가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유명 메이저의 브랜드 라면 소비자들은 정유사의 상표로 인식할 소지가 많음
- 외국업체에 대한 상표표시제의 적용범위 또는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품질보정시설에 대한 개념 등 근거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현행 상표표시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석유사업법 등을 통해 논리보완 및 관련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메이저급의 외국업체가 국내 유통산업 진출시 상표표시제에 대한 발생 가능한 논란과 대책방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 메이저의 가능한 상표표시 위반과 대책

진출형태	상표표시제 위반여부	대책방안	비 고
(석유제품공급) - 국내의 특정 정유사 (진출형태) - 수입업자  ①	○상표표시제는 정유사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 상표도 자체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판매업체가 자체상표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표표시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상기 자체상표를 부착하는 주체가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는 외국 메이저의 Pole일 경우에는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함.	○메이저의 세계적 위상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메이저 상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는 해당메이저가 자체 생산/공급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본 판매방식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 표시/광고라는 논리 견지를 통해, 해당 상표표시 방지	
(석유제품공급) - 국내정유사 - 수입 (진출형태) - 수입업자 - 판매업자  ②	○정제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여러 정제업자(수입업자 포함, 이하 같음)의 제품을 단순 교체/혼합 판매하면서 특정 정제업자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 ○단 정제업자가 타 정제업자 제품을 공급받거나 또는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자기 제품 품질수준을 미달하지 않으면 무관	○즉, 左記 제품교환의 경우, 각 공급업체 별로 다양한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을 자체 보정시설을 통해 자기의 품질수준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이러한 품질보정은 제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제시설을 보유한 정제업자만 가능한 행위임. ○반면, 수입업자는 정제업자와는 달리 단순히 제품만 국내에 도입/판매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므로, 품질보정이란 제조행위 자체를 수행할 기능도 능력도 없음.	○정유사 제품교환은 교환, 인수한 제품을 자기 책임하에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즉, 보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 ○현 석유사업법상 품질보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으나, 과거 수출입업자에 대한 요건상의 개설 시설 및 수첨탈황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속히 구체적인 명문화 필요.
(석유제품공급) - 수입 (진출형태) - 수입업자 - 판매업자	○자체 수입한 제품만을 판매하면서 자기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①경우보다 소비자 오인성 유발 가능성 희박.	○실질적으로 상표표시제를 통한 대응은 어려움	○제도의 엄격한 적용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7. 대외개방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 대응

### ○ 석유비축의무 부과등 유사시 석유안정 확보 의무

-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 석유판매업(주유소), 석유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다 석유저장시설요건 및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17조 등)
- 석유사업등록시 수시로 석유비축의무 부과(고시)

### ○ 수익성에 따라 석유수급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석유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협회 주관으로 업계가 일정 수준의 석유수급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함
- 석유정보망 및 석유수급 예측모델 활용 정부차원의 석유수급계획 수립·보정체계 보완 및 예측능력 강화
- 과도한 석유제품 수입시 관세율 조정 등으로 대응

## 8. 검토가 요구되는 석유산업 지원제도

### ○ 원유도입선 다변화 보조

-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미주, 아프리카에서의 원유 도입시 중동 원유도입대비 수송비 차액을 보조
- 우리나라에 진입한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여부 검토

### ○ 유전개발사업 용자보조

- 석유자원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원확보와 자주개발 원유도입 목표실현을 위한 국내외 석유개발 업체 보조

- 외국인기업(외국인이 자본금 혹은 의결권의 과반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경우)에 대한 보조여부 검토

### ○ 해외 석유개발조사 보조

-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시 대상광구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유망광구 확보 촉진하는 제도
- 국내 법인화 되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광구조사활동에 대한 보조여부 검토

## VI. 요약 및 결론

### 1. 외국인 진입시기 및 진입형태

#### 가. 진입시기

- 현시점에서 국내 석유산업이 전면 개방된다 해도 외국인 기업의 적극적인 조기 진입은 예상되지 않음. 그 주요 이유로는,

#### ① 정제업

첫째, 국내 석유시장의 공급과잉 및 과잉경쟁 둘째, IMF 등 국내 경기후퇴로 인한 석유수요의 침체 전망

셋째, 국내 석유기업 회계의 불투명성

넷째, 국내 외국인 투자제도의 불확정성

#### ② 석유수입 및 주유소

첫째, 정유사 지원금으로 인한 기존 주유소 유인의 어려움



둘째, 신규 주유소 건설을 위한 양호한 입지 선정의 어려움

셋째, 석유수입, 판매를 위한 저장설비 확보 및 유통망 구축의 애로

○ 그러나 국내 석유시장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외국인 투자유인 요소를 갖고 있음.

첫째, 시장 규모면에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이며,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이 전망

둘째, 중국 및 북한 석유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리한 입지적 조건

셋째, 아시아의 자사 Refinery와 연계한 수급조정을 통해 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성

○ 따라서 석유산업의 개방 이후 외국인 기업은 국내 경제의 추이 및 외국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도개선 추이를 보아가면서 국내 석유시장에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나. 진입형태

### ① 정제업

○ 외국인 기업의 정제설비 건설 등 신규 진입은 국내 석유시장 공급과잉으로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음

○ 현재 외국인의 국내 정제업 진출형태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존 정유업체의 지분확대를 통한 기업인수 및 경영권 확보임. 특히 높은 부채율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일부 정유사가 인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② 유통업

○ 주유소 등 유통부문은 저장설비, 수송설비, 유통망 구축 등의 어려움으로 초기에는 외국인 기업의 단독 진출보다는 이러한 설비나 유통망이 어느정도 구축된 국내 파트너와 합작형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 수익성이 높은 기존 주유소의 확보는 높은 프리미엄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기존 주유소 매입과 신규 주유소의 신설, 계열 주유소 확충, 하이퍼마켓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포트폴리오하에서 주유소의 계열화를 추진할 것임.

○ 국내유통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시장확보전략은 차별화된 가격전략뿐만 아니라,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판매망 확보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③ 정제업+유통업

○ 개방후 외국인기업은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되고 시장대응에 대한 탄력도가 낮은 정제업보다는 자본 부담이 작고 진입 위험도가 낮은 수입, 유통업 부문으로의 진출이 먼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외국인 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에도 많은 진입장벽이 상존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국내 시장확보를 위해 인수조건 여하에 따라 이미 유통체계가 갖추어진 국내 정유사의 인수를 통한 정제업 진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2. 석유산업 개방의 영향

○ 기존 정유 5사 체제는 개방후에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기업의 진입은 진입 형태나 투자전략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상존함.

① 긍정적 효과

- ◆ M&A, 물류통합 등 국내 석유산업의 구조 조정 가속화
- ◆ 외자도입 및 재원조달 용이
- ◆ 원유확보력 제고
- ◆ 국내 정유사의 경영기법 선진화 및 국제화
- ◆ 유통업, 주유업의 다양화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

② 부정적 효과

- ◆ 한계기업의 퇴출압력 및 가속화에 의한 국민경제 부담
- ◆ 축소지향적, 파괴적 경쟁 가능성
- ◆ 외국인의 저가격 경쟁전략시 유통질서의 혼란 우려
- ◆ 정부의 정책집행력 및 긴급시 시장통제력 약화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시장확장, 설비확장이 국내 정유기업 전략의 우선적 목표였다면 대외 개방 이후에는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석유관련 법이나 제도들은 외국인의 시장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외 개방 이후 외국인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 내외국인에게 차별적 경쟁을 유발시키는 제도 등은 개선시켜야 할 것임.

○ 그동안 정부와 기업간의 관행적 협력체제는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여나 간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석유의 특성상 수급 비상을 대비한 정부의 시장 통제력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고 경쟁이나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3. 개방화의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 가. 대응방향

○ 본격적인 외국인 진입에 대해 국내 석유산업이 대비해야 될 사항은 첫째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추진, 둘째, 기존 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셋째는 개방이후의 석유산업 구조에 적절한 정책수립 등으로 요약됨.

○ 한계기업은 조속히 시장에서 퇴출하고 산유국 및 메이저와의 활발한 M&A 및 동종 업종 및異업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나. 제도적, 정책적 대응 과제

##### 1) 법,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 ①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관세 차등화

○ 소비자 정제원칙을 유지하고 일부 우려가 되는 단순 수입의 시장교란 행위를 억제하며 이미 차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재 원유와 석유수입간의 동등관세 제도는 차등관세 제도로 개선

○ 원유와 석유제품, 석유제품간의 관세차등율은 개방 이후의 예상되는 국내시장 상황, 현재 실행중인 외국의 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

## ② 수입부과금 제도

- 현행 제도는 통관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정유사에게 자금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소요자금의 회수시점까지 일정기간 그 납부를 유예
-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수입부과금 유예시에도 원유와 제품간에 유예기간을 차등하여 적용.
- 수입시 부과금 납부대상이 아닌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은 수입시 원유형태에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품이 수출되었을 경우는 환급대상에 포함.

## ③ 상표표시제

- 현행 상표표시제는 판매업체들이 국내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으로서, 제정 당시 외국업체의 진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지 않아 현행 규정 적용에 제약이 따름.
- 특히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상표표시 주체인 정유사의 내외국 업체의 구분이 없고 외국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풀 사인과 유사하게 설치할 때의 규정 검토.
- 상표표시제는 정유업자의 유통, 주유업자, 국내 진출하려는 해외 업체 및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④ 해외 석유개발 및 수입다변화 지원제도

- 자주 원유도입을 촉진하고 원유의 중등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석유개발 및 수입다변화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서 외국인 기업은 배제하고 있지만 외국법인을 자본금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본금이나 의결권이 과반수이하이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법인은 내국인에 속함.

-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외국인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및 개방화이후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내외국인업체의 지원차별화에 대한 문제 등이 검토된 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명확화

- 석유산업 개방 이후 유통부문의 가격경쟁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경쟁심화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증가, 외국인의 참여로 인한 불공정 행위의 다양화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함.
-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의 기준이 모호함. 따라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불공정 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⑥ 부관점 관리 합리화

- 가격 인하 판매(덤핑)가 비교적 용이한 부관시장 성장에 대비한 제도개선
- 일반판매소(부관점)는 등유 및 신설되는 난방유만을 취급토록 하고 경유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단,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지는 휘발

유, 경유 판매 허용)

## 2) 대응 정책수립을 요하는 과제

### ① 유가모니터링제의 강화 및 가격안정책

- 대외개방에 따른 다양한 가격형성에 대비해 유가모니터링제의 강화 및 그 실효성을 제고
- 유가모니터링 결과와 수익성과의 관계 분석 및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정조치 여부의 필요성 판단자료로 활용. 과열 가격경쟁에 대한 정부의 내부처리지침 마련
- 일반 판매소(부판매)까지 유가모니터링 확대 검토
- 석유개발공사 등을 활용 표준 석유제품 가격 공시를 검토하여 정유사 및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출혈가격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유도

### ② 수급 안정책

-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협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상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석유수급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유도
- 석유정보망 및 석유수급 예측모델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석유수급계획 수립·보정체계 보완 및 예측능력 강화
- 과도한 석유제품 수입시 관세율 조정 등으로 대응하고 석유사업 등록시 수시로 석유비축의무 부과(고시)

### ③ 투자합리화 정책

- 장기수요전망에 입각한 투자 합리화(과잉·중복투자 방지) 여건 조성
-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 조정을 위한 석유협회의 기능 정립

### ④ 한계 주유소 퇴출 지원

- 경쟁력이 취약한 주유소의 원활한 사업퇴출을 지원
- 주유소를 전업하여 벤처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벤처창업자금을 준하여 자금 융자, 주유소협회에 주유소전업안내센터 설치하여 주유소 사업성 분석, 경영 다각화 등 경쟁력 제고 지원, 정유사와 주유소와의 자금청산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사업안내, 전업자금지원 등 ☺

## 환경보전

### 유류유출사고를 방지합시다

정부는 날로 악화되는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유류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출유류 방제체계를 세워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유류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의하면 유류를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의 주변에 유류유출 방지턱을 설치하고, 부지내 배수구의 최종방류구 이전에 저류지·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여 유류의 외부유출을 막고, 유류의 저장시설 및 배관 설비 등에 대한 노후·부식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류의 자동이송장치 등 각종 자동화설비·기구의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는 플로트 스위치를 설치하는 등 유류가 새거나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유출유류 방제체계로서 수질오염시 전국사업장을 지휘·감독·지원하고 수습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수질오염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단위사업장별로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수질오염사고는 94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류유출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류유출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1)유류운송차량의 전복·추락 (2)유류저장탱크 및 배관설비의 노후·부식등 부실 (3)유류자동차 송장치의 고장 또는 조작실수 (4)유류 관련 시설·차량·기기등의 취급 부주의 (5)기타 유류의 불법 투기등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원 상류 하천 또는 호수에서 유류운송차량이 상수원으로 직접 전복·추락하거나, 저유시설등에서 많은 양의 유류가 유출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될 경우, 급수중단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방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팔당호의 경우,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유류가 다량 유입될 경우 대형 국가재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